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1144 |
|------------|------|

제출년월일 : 2007. 4.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비공해업종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개발행위시 기반시설구비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허용

-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비공해업종)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별표 19, 별표23)
-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외의 창고를 허용 (별표 19, 별표 23)
- 준공업지역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허용 (별표 13)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허가시 제출되는 평균입목축적조사서 작성자 자격,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대경사도는 20도에서 36퍼센트로 개정하여 누구나 경사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경사도 측정방법을 신설(퍼센트 개념) (안 제21조, 별표 27)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 등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적합한 도로 확보,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시 개발행위허용 (안 제22조)

- 개발행위가시 도로 등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공장설치시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9조)
-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분할제한면적을 60㎡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25조)

다.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정비

- 건축법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21개 → 27개)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19647호, 2006. 8. 17. 공포 2006. 8. 17. 시행)되어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 (안 제33조 내지 제35조, 안 제40조, 안 제45조, 안 제47조 내지 제49조, 별표 1 내지 별표 26)

라. 자연공원구역내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에서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 (안 제57조)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 삭제 (제71조)

바. 기타

- 충주호를 청풍호로 변경 (안 제21조, 별표 25, 별표 26)
- 법령 낫표 표시 및 띠어쓰기 표기 (안 제1조 등 해당 조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첨부 : 1. 입법예고 사본 1부.

2. 입법예고 검토결과 1부.

3.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1부.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 허가신청일전 1년 이내 작성한 것에 한한다) 이 100페센트 미만인 토지
 2. 별표 27의 측정방법으로 산정한 경사도가 36%미만인 토지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2. 부지조성 후 사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전체부지 면적 중 경사도가 36%이상의 토지의 면적이 허가면적의 10

퍼센트 미만인 경우

- ③ 영 별표1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중 청풍호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별표25에서 정한 청풍호 주변 경관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구단위계획등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2. 집단마을에서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가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용창고시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 면적 1,000㎡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1,000㎡미만)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만, 이때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설치는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50m미만으로서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한 경우로서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 나. 「택지는물관리법」에 의한 지하수이용시설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마을 상수도
 - 다.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별표19 제2호 카목·타목 및 별표23 제2호 파목·하목에 해당하는 공장

제23조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을 아래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m²
2.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 60m²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조례 제22조제4호에서 정한 공장에 대하여 영 제57조제4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받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로 한다.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체육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제1호 내지 제5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체육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 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체육장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생활·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생활·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1호”를 “제15호”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동조 제3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5호”를 “제19호”로 한다.

제48조제1호·제2호, 제49조제1호·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7조제3호중 “집단시설지구와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별표26 건축물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100퍼센트)”를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별표26 건축물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은 각각 150퍼센트 이하,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중 “영 제85조제4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7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22조 제2호 다목은 「하수도법」(법률 제8014호, 2006. 9. 27)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발급수수료는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정수조례」가 개정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의 「제천시도시계획조례」(조례 제598호, 2003. 8. 18) 제71조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별표 24제 2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도는 「하수도법」(법률 제8014호, 2006. 9. 27)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하수도법」(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로 각각 본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네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육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참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충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충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참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

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의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위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탁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위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을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사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내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동호 나목·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충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충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충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충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사목·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둑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준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6)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7)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8)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화학제품제조시설(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시설을 제외한다.
 - (6)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7)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8)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9)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10)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1)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종별 품목분류 |
|----------------|------------------|
| 17401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17402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17403 | 날염가공업 |

| | |
|-------|---|
| 17409 |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
| 18201 | 원모피 가공처리업 |
| 19101 | 원피가공업 |
| 19102 |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
| 21110 | 펄프 제조업 |
| 21121 | 신문용지 제조업 |
| 21122 |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
| 21123 | 크리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 2112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23210 | 원유 정제처리업 |
| 23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23229 | 기타 석유제제물 재처리업 |
| 24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
| 24112 | 석탄 화합물 제조업 |
| 24113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 24119 |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 24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 24131 |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24132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24141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 24149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 24151 | 합성고무 제조업 |
| 2415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24153 |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24211 |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421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423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24311 |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24312 | 농약 제조업 |
| 24321 |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433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433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
| 24341 |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
| 24342 |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 |
|-------|-----------------------------|
| 24391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24392 |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
| 24394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243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 24401 | 합성섬유 제조업 |
| 25111 | 타이어 튜브 제조업 |
| 25112 | 타이어 재생업 |
| 25192 |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 25213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25221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5292 |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
| 26121 |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26993 |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7111 | 제철 및 제강업 |
| 27112 | 합금철 제조업 |
| 27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27121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2 |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3 | 철강선 제조업 |
| 27132 | 강관 제조업 |
| 27191 |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27121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2 |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3 | 철강선 제조업 |
| 27132 | 강관 제조업 |
| 27191 |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27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
| 27290 |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 27311 | 선출주물 주조업 |
| 27312 | 강주물 주조업 |
| 28921 | 금속 열처리업 |
| 28922 | 도금업 |
| 28923 |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28929 | 기타 금속처리업 |
| 28991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31402 |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
| 315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32192 | 인쇄회로판 제조업 |
| 37100 |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 37200 |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참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 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 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참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내

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 나목 및 다목의 건축물은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

목 ·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동호 나목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 · 임 · 축 · 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19 제2호 카목(1) 내지 (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 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시설을 제외한다.
- (6)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7)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8)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시설을 제외한다.
- (6)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7)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8)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9)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10)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1)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종별 품목분류 |
|----------------|------------------|
| 17401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17402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17403 | 날염가공업 |
| 17409 |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
| 18201 | 원모피 가공처리업 |
| 19101 | 원피가공업 |
| 19102 |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

| | |
|-------|---|
| 21110 | 펄프 제조업 |
| 21121 | 신문용지 제조업 |
| 21122 |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
| 21123 |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 2112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23210 | 원유 정제처리업 |
| 23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23229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24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
| 24112 | 석탄 화합물 제조업 |
| 24113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 24119 |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 24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 24131 |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24132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24141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 24149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 24151 | 합성고무 제조업 |
| 2415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24153 |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24211 |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421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423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24311 |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24312 | 농약 제조업 |
| 24321 |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433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433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
| 24341 |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
| 24342 |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24391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24392 |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
| 24394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243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
|-------|-----------------------------|
| 24401 | 합성섬유 제조업 |
| 25111 | 타이어 튜브 제조업 |
| 25112 | 타이어 재생업 |
| 25192 |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 25213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25221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5292 |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
| 26121 |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26993 | 석면·암연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7111 | 제철 및 제강업 |
| 27112 | 합금철 제조업 |
| 27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27121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2 |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3 | 철강선 제조업 |
| 27132 | 강관 제조업 |
| 27191 |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27211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212 |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213 | 철강선 제조업 |
| 27219 | 강관 제조업 |
| 27221 |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27229 |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2723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3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3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3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4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4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4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90 |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 27311 | 선출주물 주조업 |
| 27312 | 강주물 주조업 |
| 28921 | 금속 열처리업 |

| | |
|-------|--|
| 28922 | 도금업 |
| 28923 |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28929 | 기타 금속처리업 |
| 28991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31402 |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
| 315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32192 | 인쇄회로판 제조업 |
| 37100 |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 37200 |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영 별표 20(계획관리지역) 제2호 및 영 별표 27(관리지역) 제2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거리환산은 지역 · 구역 경계로부터 부지경계까지 최단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가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
미터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 한한다)
2.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실제 거주하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계는 마을 가
장자리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단,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자연마을의 경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자연마을”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집산된 마을을 말한다.

【별표 25】

청풍호 주변 경관 허가기준

청풍호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 8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단,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
회 심의 등 관련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특별히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선은 제천시 건축조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건축물의 외관은 호반 및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 나. 건축 규모가 큰 경우 10미터 내지 20미터 간격으로 분절효과를 연출하여야 한다
 - 다. 이웃한 건축물과 평면 및 입면과 구조가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외관히 우수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은 다수인이 숙박 또는 주거를 위한 독립된 형태가 아닐것
3. 건축물의 색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건축물의 주조색은 7.5YR, 10YR, 2.5YR로서 명도 6내지7, 채도 2내지4 또는 나무, 돌, 흙 등 가급적 자연재질의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옥외광고물, 창문, 발코니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 보조색은 7.5YR, 10YR, 2.5YR로서 명도 8내지9, 채도 N내지2 또는 건축물의 주조색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 다. 지붕, 파라펫 등의 건축물 강조색은 7.5YR, 10YR, 2.5YR로서 명도 3내지4, 채도 N내지2 또는 건축물의 주조색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지붕은 가급적 평스라브는 배제하고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지붕의 재질은 기와나 아스팔트형글등 자연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 다. 건축물 외벽의 4면은 가급적 동일한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5. 대지내 조경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건축물의 전면 공지에는 화단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 나. 대지내 조경수는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벚꽃나무등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대지내 주차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주차장은 호반과 자연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나. 주차장 주변은 가능하면 녹화나 조경 등으로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담장 및 대문은 미설치하거나, 설치할 경우 가급적 돌담, 목재, 꽃나무 등으로 하여야 한다.

- 나. 발코니와 창은 외벽에서 가급적 2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건축물 옥상에는 원색적인 물탱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창고와 작업장등의 건축물은 건축물 본체와 색채 등에서 가급적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 마. 건축물의 구조는 파이프천막, 경량조립식철골, 비닐하우스, 함석 및 슬레트 구조가 아닐 것(단, 농어업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6】

건축물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및 미관기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 지구 및 구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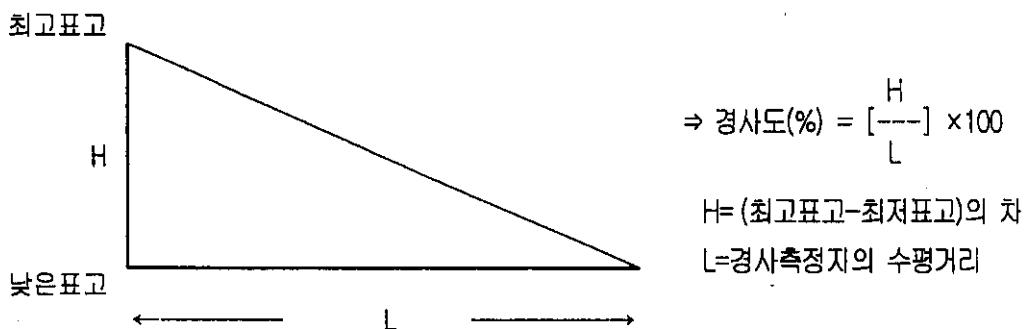
1. 건축물 미관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로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한한다(단, 청풍호주변의 건축물 미관기준에 대하여는 청풍호 주변 경관 허가기준에 따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미관기준을 수립한 지구 · 구역 등에 대하여는 당해계획에 따른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다목의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16호 및 제27호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미관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외관이 우수하거나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 가. 도로에 접한 30미터 이내의 주변 건축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면형태가 아닐것
 - 나. 외관은 일률적인 박스형 스라브 또는 경사 파라펫 구조가 아닐 것(단, 도로에 접한 전면벽 또는 옥상에 건축물의 개성과 미를 나타낼 수 있는 미관시설을 한 경우 제외한다)
 - 다.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3층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제외)로서 최상층의 용도가 주택일 경우 창문 등의 외부형태는 하부층의 형태와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 라.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3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도로에 접한 전면벽의 외부마감은 드라이비트후 도장 또는 미장후 도장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흑두기 화강석 등의 미관재료와 50퍼센트 이상 혼용하거나 허가권자가 특별히 외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마. 건축물은 파이프천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함석 및 스판드 구조가 아닐 것
- 바.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이하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27] 경사도 측정방법

최대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최대경사도 측정의 표고차는 대상토지내의 최저표고점과 최고표고점을 측정하며, 최저표고점은 사업시행지의 하단부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설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p> |
| <p>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u>지방자치법</u>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 <p>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u>지방자치법</u>」</p> |
| <p>제14조(폐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시행령</u>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u>건축법시행령</u>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p>② (생 략)</p> | <p>제14조(폐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 시행령</u>」 2. 「<u>건축법 시행령</u>」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 략) | <p>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
| <p>제21조(개발행위허가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충주호 주변지역은 다음 각호와 제2항의 규정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 | <p>제21조(개발행위허가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 |

| | |
|---|---|
| <p><u>적어 100퍼센트 미만인 토지</u></p> <p>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②영 별표1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중 충주호 주변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제천시 경관형성심의 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은 별표25에서 정한 충주댐 주변 경관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 2. <u>계획홍수위선 50m이내의 지역은 별25에서 정한 충주댐주변 경관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u> <p>③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형성심의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2. 조감도 또는 조감사진 1부 3. 계획도면 1부 <p>④ 제2항 1호 및 2호는 다음 각호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구단위계획등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u> 2. <u>집단마을에서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가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참고시설 중 농업용참고시설 (단, 건축의 높이는 2층이하, 8m이하인 것에 한한다.)</u> <p><u>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규정에</u></p> | <p>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 허가신청일전 1년 이내 작성한 것에 한한다)이 100퍼센트 미만인 토지</p> <p>2. <u>별표 27의 측정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경사도가 36%미만인 토지</u></p> <p>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2. 부지조성 후 사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전체부지 면적 중 경사도가 36%이상의 토지의 면적이 허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p>③영 별표1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중 청풍호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별표25에서 정한 청풍호 주변 경관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구단위계획등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u> 2. <u>집단마을에서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가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참고시설 중 농업용참고시설</u> <p><u>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규정에</u></p> |
|---|---|

| | |
|--|--|
| <p>의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p> | <p>의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면적 1,000㎡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1,000㎡미만)에서 제외한다.</p> |
| <p>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p> | <p>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만, 이때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설치는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50m미만으로서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p> |
| <p>2. 참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p> | <p>2.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한 경우로서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p> |
| <p>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립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 <p>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지하수이용시설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용등의를 받은 마을상수도 다.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개인화수처리설</p> |
| <p>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p> | <p>3. 참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p> |
| <p>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p> | <p>4. 별표19 제2호 카목·타목 및 별표23 제2호 파목·하목에 해당하는 공장</p> |
| <p>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p> | <p>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 ----- ----- ----- -----</p> |

| | |
|---|--|
|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u>건축법시행</u> <u>규칙</u>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6. (생략) <p><u>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u> <u>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u> <u>분할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u> <u>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u> <u>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u> <u>할제한 면적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u> <u>정에 의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u></p> |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 「<u>건축법 시행규</u> <u>칙</u>」 ----- 4. ~ 6. (현행과 같음) <p><u>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u> <u>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u> <u>분할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u> <u>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u> <u>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을</u> <u>아래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지역 : 200m² 2. 관리, 농립, 자연환경보전지역 : 60m² |
| <p><u>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u> <u>의견청취)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u> <u>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u> <u>의견을 청취한 후 허가할 수 있다. 다만,</u> <u>법제59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u> <u>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u> <u>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 4. 경사도 20도이상인 토지 | <p><u>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u> <u>자문) 시장은 조례 제22조제4호에서 정</u> <u>한 공장에 대하여 영 제57조제4항에서</u> <u>정한 서류를 제출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u> <u>의 자문 후 허가할 수 있다.</u></p> |
| <p><u>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u> <u>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u> <u>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u> <u>단체”라함은 <u>지방공기업법</u>에 의하여 충</u> <u>청북도 및 청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u> <u>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u> <u>다.</u></p> | <p><u>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u> <u>공공단체) -----</u></p> <p>----- 「<u>지방공기업법</u>」 -----</p> <p>-----</p> <p>-----</p> |
| <p><u>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 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형질변경지 | <p><u>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p>-----</p> <p>-----</p> <p>-----</p> |

| | |
|--|--|
| <p>복구비용의 산정기준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p> | <p>「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p> |
| <p>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체육장이 있는 골프연습장 6.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11호의 숙박시설 7.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12호의 위락시설 8.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13호의 공장 9.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14호의 참고시설 10.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17호의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3.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u>건축법시행령</u> <u>별표1</u>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p><신설></p> | <p>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 2. 「건축법 시행령」 ----- 3. 「건축법 시행령」 ----- 4.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체육장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18호의 참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21호의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u>별표1</u>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체육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참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기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판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령」
4. 「건축법 시행령」
5. 「건축법 시행령」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체육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참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기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

| 현시설 <신설> | 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
| <p>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u>의 공장 2.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u>의 창고시설 3.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u>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u>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u>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6.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u>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u>의 묘지관련시설 | <p>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
| <p>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u>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u>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u>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u>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u>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u>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u>의 공장 5. <u>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u>의 창고시설 6. <u>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u>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u>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u>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u>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u>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 | <p>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

| 축장 및 도계장 | 도축장 및 도계장 |
|--|--|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생활·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생활·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 12. (생략) ② ~ ③ (생략)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 |
|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탁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 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탁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 |

| | |
|--|---|
| <p><u>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u></p> <p>11.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u></p> <p>12.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u></p> <p> 가. 교도소</p> <p>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생활·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p> <p>13.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u></p> <p>< 신설 ></p> <p>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박시설제한지구 :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u>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u>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u>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제48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u>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u>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 <p><u>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u></p> <p>11. 「건축법 시행령」 <u>별표1 제21호</u>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p> <p>12. 「건축법 시행령」 <u>별표1 제22호</u>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13. 「건축법 시행령」 <u>별표1 제23호</u>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p> <p> 가. 교도소</p> <p>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생활·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p> <p>14. 「건축법 시행령」 <u>별표1 제26호</u>의 묘지관련시설</p> <p>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p> <p>-----</p> <p>1. ----- : 「건축법 시행령」 <u>제15호</u> -----</p> <p>2. ----- : 「건축법 시행령」 <u>제16호</u> -----</p> <p>3. ----- : 「건축법 시행령」 <u>제19호</u> -----</p> <p>제48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p> <p>-----</p> <p>1. 「건축법 시행령」 -----</p> <p>2. 「건축법 시행령」 -----</p> |
|--|---|

| | |
|---|---|
| <p>제49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 <p>제49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 |
| <p>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단, 별표26에 의한 건축물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미관기준에 적합할 경우 당해 용도지구·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 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별표26 건축물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80퍼센트).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와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별표26 건축물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100퍼센트) 4. (생략) | <p>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p style="text-align: right;">공원집단시설 지구는 2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별표26 건축물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은 각각 150퍼센트 이하, 100퍼센트 이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현행과 같음) |
| <p>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56조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p> | <p>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p> |
| <p>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p> | <p>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p> |

| | |
|--|---|
| <p>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p> $=[(1+0.31)/(1-a)] \times (\text{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p>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p> |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p> |
| <p>② (생략)</p> <p>제71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p> <p>①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 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 원으로 한다.</p> <p>②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 <p>② (현행과 같음)</p> <p><삭 계></p> |

□ 관계법령

【 제21조, 제22조, 별표27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정]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20, 별표 27 관련】(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240호, 2004. 1. 20]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0, 별표 27 관련】 (10,000m²미만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36호, 2005. 9. 8]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차·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중 폐기물중간 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 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종별 품목분류 |
|-------------|------------------|
| 17401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17402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17403 | 날염가공업 |
| 17409 |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
| 18201 | 원모피 가공처리업 |
| 19101 | 원피가공업 |
| 19102 |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
| 21110 | 펄프 제조업 |
| 21121 | 신문용지 제조업 |
| 21122 |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

| | |
|-------|---|
| 21123 | 크리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 2112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23210 | 원유 정제처리업 |
| 23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23229 | 기타 석유정제물 제조업 |
| 24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
| 24112 | 석탄 화합물 제조업 |
| 24113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 24119 |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 24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 24131 |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24132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24141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 24149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 24151 | 합성고무 제조업 |
| 2415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24153 |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24211 |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421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423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24311 |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24312 | 농약 제조업 |
| 24321 |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433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433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
| 24341 |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
| 24342 |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24391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24392 |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
| 24394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243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 24401 | 합성섬유 제조업 |
| 25111 | 타이어 튜브 제조업 |
| 25112 | 타이어 재생업 |
| 25192 |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 25213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25221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5292 |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
| 26121 |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26993 |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7111 | 제철 및 제강업 |
| 27112 | 합금철 제조업 |
| 27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27121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2 |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3 | 철강선 제조업 |
| 27132 | 강관 제조업 |

| | |
|-------|--|
| 27191 |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27121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2 |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3 | 철강선 제조업 |
| 27132 | 강관 제조업 |
| 27191 |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27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90 |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 27311 | 선출주물 주조업 |
| 27312 | 강주물 주조업 |
| 23921 | 금속 열처리업 |
| 23922 | 도금업 |
| 23923 |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23929 | 기타 금속처리업 |
| 23991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31402 |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
| 315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32192 | 인쇄회로판 제조업 |
| 37100 |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 37200 |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차. 별표 19 제2호 사목 및 별표 20 제2호 차목·카목의 공장

【제71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15호, 2005. 12. 7.]

< 본조 삭제 >

제13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

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0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680호, 2005. 1.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36호, 2005. 9. 8]

제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⑦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 삭제 <2005.1.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005. 9. 8 개정>

【 제15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36호, 2005. 9. 8]

제4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①법 제5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 제57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30호, 2005. 11. 11]

제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25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00호, 2006. 3. 23]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립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 제33조-35조, 40조, 45조, 47조-49조, 별표1-별표26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 8. 17]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립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건축법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제2조 (정의)

②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첨)

【 제31조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50호, 2003. 10. 22]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 전용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식생정착)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당해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다.

【 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30조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 ①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제30조제1항 관련)

| 기술 종류 | 기술 등급 | 자격요건 | 업무범위 |
|-----------|-------|--------------------------------|--|
| 산림 경영 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 총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시공 및 감리 |
| | 기술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
| | 기술 2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산림조사 및 선목(選木) |

| | | |
|----------|----------------------------------|--|
| 기능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 충 방제사업의 시공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
| 기능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 기능 2급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1450호, 2003. 10. 22]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6.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이하 "영림 기술자"라 한다)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산림법시행령 폐지(2006. 8. 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부칙 제3조 (영림기술자·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 종 전 | 경과조치 |
|----------------------|-----------------------------|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

제천시공고 제 2007-324호

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천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조례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9일

제 천 시 장

1. 조례명 : 제천시도시계획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비공해업종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건축법」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시 기준을 명확히하고 소규모 개발행위시 기반시설구비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허용 개정

○ 계획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비공해업종)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별표 19)

○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외의 창고를

허용 (별표 19, 별표23)

- 준공업지역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허용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허가시 제출되는 평균입목축적조사서 작성자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대경사도는 20도에서 32퍼센트로 개정하고 누구나 경사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경사도 측정방법을 신설(퍼센트 개념) (제21조, 별표 27)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 등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 부지면적 1,000m²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적합한 도로 확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개발행위허용 (제22조)
-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분할제한면적을 60m²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제25조)

다. 건축법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21개 → 27개)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 (제33조 내지 제3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별표1 내지 별표 26)

라. 자연공원구역내 밀집취락지구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를 공원밀집마을지구(종전 밀집취락지구)의 용적률 200퍼센트로 완화(제57조)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 삭제(제71조)

4. 개 정 안 : 붙임

5. 의견 제출

제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천시홈페이지(www.okjc.net)→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열람하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3월 30일까지 제천시장(주소 : 제천시 천남동 12-2, 참조 지역계획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와 기관인 경우는 단체 및 기관명과 그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지역계획팀 (전화 043-641-5155, 팩스 043-641-5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검토결과

[1] 의견접수 검토

| 조 항 | 개정(안) | 제시의견 | 건수 | 발영여부 |
|---|---|---|----|--|
| 제21조①항 개발행위허가기준 | 1. 평균입목축적도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 | • 산지관리법상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 | 1 | 기반영사항 (산림자원법) |
| | 2. 최대경사도가 32%(18도) 미만인 토지 | • 평균경사도 20도미만이 적정 | 1 | 일부반영 (최대36%(20도) 미만 환원) |
| 제22조①항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 1. 기존시설(도로·상수도, 하수도)에 연계설치시 50m미만 (1천㎡미만) | • 기반시설을 본인이 설치시 50m이내 규정은 적절치 않음 | 1 | 미반영 (불특정다수의 통행불편 방지) |
| | 2.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대 체시설 허용 (1천㎡미만) 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나. 먹는물관리법 지하수 개발, 마을상수도 사용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 대체시설(지하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허용은 바람직하나, 부지면적 1천㎡ 미만인 면적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규모에 부적절함 | 7 | 미반영 (기반시설 확보시 적용, 난개발방지 시민의 건전한 토지이용개발) |
| 제22조②항 | 2. 충주호주변 50미터 이 내의 지역은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연결 (단, 5호이상의 집단자 연마을, 향후 1년이내 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예외허용 - 1천㎡미만) | • 청풍호주변은 공공처리시설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풍호 주변의 개발을 저해 하고, 결국 건축이 불가함 • 市에서 정화조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및 장려 • 호수주변에도 지하수개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허용 • 재산권침해이며 불법조례임 | 7 | 미반영 (호수수질보전 , 경관보전, 5호이상 마을 예외적 허용으 로 건전한 토 지이용에 장애 없음) |

| | | | | |
|------------------------|--|--|---|----------------------------------|
| 별표 19 제2호타목 | 계획관리지역내 1만m ² 미만 의 비공해공장 허용 | • 공장허용은 바람직하나, 기반시설적용과 연접개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완 요망 | 1 | 미반영 (예외적용 불가) |
| 별표 24 제2호 | 음식점, 숙박시설 제한지역 -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설치지역 허용 | • 개정 하수도법('07. 9. 28) 반영 - 공공하수도, 개인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 1 | 일부반영 (공공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 제57조 제3호 | 자연공원구역내 용적률 완화 - 공원집단시설지구 150%이하 - 공원밀집마을지구 200%이하 | • 자연공원구역내 - 공원집단시설지구 200%이하 - 공원밀집마을지구 150%이하 | 1 | 반영 |

② 추가 검토

| 조항 | 현 조례 | 개정(안) |
|---|---|---|
| 별표24 제2호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제2호. 하수도법 제2조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실제 거주하는 10호이상의 자 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 , 실제 거주하는 10호(주거용)이 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지역. 이 때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 된 지역”의 경계는 마을 가장자 리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 역을 말한다. (단, 계획홍수위선 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은 자연 마을의 경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제21조②항제1호 경사도 비적용지역 | 신설 |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계획관 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 제21조③항 등 관련조항 충주호→청풍호 | 충주호 주변지역 ~, | 청풍호 주변지역 ~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① 의안번호 1번

- 규제사무 :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제21조

- 규제내용

- 제21조제1항 개발행위허가기준(안)

-제21조(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1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 성한 것으로 허가신청일전 1년 이내 작성한 것에 한한다)이 100% 미만인 토지

2. 별표 27의 측정방법으로 산정한 최대경사도가 36%미만인 토지

- 제21조제2항 개발행위허가기준(안)

-제21조(개발행위허가기준)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2. 부지조성 후 사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전체부지 면적 중 경사도가 36%이상의 토지의 면적이 허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심의의결 내용 : 원안가결

- 기타 제시의견 검토

□ 계획관리지역에서 입목축적, 경사도 적용 강화문제 제기

-제21조제2항제1호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만 적용 배제” 토록 되어 있음

-제2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입목축적까지 포함하자는 문제가 제기됨

② 의안번호 2번

- 규제사무 :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 제22조

- 규제내용

- 제22조 1항 개발행위허가기준(안)

-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규정에 의하 여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면적 1,000m²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제22조 2항 개발행위허가기준(안)

- 청풍호 계획 홍수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여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에 한하여 허가한다. - 이하 생략 -

○ 수정심의 의결 내용

- 1항에서 계획관리지역내의 10,000m²미만 비공해업종이라면 공장 건축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 제22조2항(청풍호계획홍수위선 50m이내 관련사항)은 삭제하도록 의결